

다른 방법<sup>137</sup> 그러나, 질병이 갑작스럽고 증언을 기록할 시간이 없다면 이 요구 사항이 무효화된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sup>138</sup> 당사자의 증언이 가능하다면, 계속보기를 여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sup>139</sup> 당사자가 병에 걸렸고 법원이 변호사에게 증언을 확보할 시간을 부여한 경우, 후속으로 증언을 위해 계속보기를 요청한 것은 적절히 거부되었으며, 당사자가 증언을 기록하는 데 충분히 병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sup>140</sup> 연방 법원에서, 당사자가 병에 걸렸더라도 계속보기를 적절히 거부한 것으로 판결되었으며, 법원은 여전히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sup>141</sup>

마찬가지로, 증언이 협정<sup>142</sup> 또는 자백<sup>143</sup>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경우, 계속보기는 적절히 거부되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그들의 법령과 법원 규칙에서 자백을 계속보기 거부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sup>144</sup> 또한, 부재 중인 당사자의 서명이 이미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계속보기는 적절히 거부되었습니다.<sup>145</sup>

따라서,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당사자가 불가피하게 부재하고 그의 증언이 증언 기록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얻을 수 없을 때, 계속보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만약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부재하거나, 그의 증언이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면, 계속보기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 \*\*형사\*\*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 참석할 권리는 제6조의 대면권과 제5조 및 제14조의 정당 절차 조항에 의해 보장됩니다.

#### \*\*참조문헌\*\*

137 Engelstad v. Dufresne, 116 F. 582 (9th Cir. 1902).

138 Roberts v. Sinkey, 136 Kan. 292, 15 P.2d 427 (1932).

139 Davis v. United Fruit Co., 402 F.2d 328 (2nd Cir. 1968), cert. denied, 393 U.S. 1085 (1969); Gordon v. Butter, 182 Neb. 626, 156 N.W.2d 778 (1968); Merriman v. Lary, 205 S.W.2d 100 (Tex. Civ. App. 1947), rehearing denied, (1947); Kaiser v. Hutcheson, 112 S.W.2d 1058 (Tex. Civ. App. 1937).

140 Roseberg v. Scott, 120 Kan. 576, 244 P. 1063 (1926).

141 Ballard v. Nye, 18 F.2d 98 (5th Cir. 1927).

142 Kitchens v. Hutchins, 44 Ga. 620 (1872).

143 See Haflin v. United States, 223 F.2d 371 (5th Cir. 1955), rev'd. on other grounds, 358 U.S. 415 (1959); Brooks v. Bast, 242 Md. 350, 219 A.2d 84 (1966); Powell v. State, 39 Ala. App. 246, 100 So.2d 38, cert. denied, 267 Ala. 100, 100 So.2d 46 (1957); Moody v. Vickers, 90 Ohio App. 210, 72 N.E.2d 280 (1947).

144 이 경우의 자백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계속보기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부재 중인 증인의 증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 증인이 그렇게 증언할 것이라고 진술하면, 그 서면은 증언 기록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제출되고 계속보기가 거부됩니다. 아래 145 참조.

145 ARK. STAT. ANN. ch. 27, § 1403 (1947); CODE OF GA. ANN. § 81-1411 (1935); IDAHO CODE ANN. § 10-109 (1948); ILL. PRAC. ACT & SUP. CT. R. 231(b); IND. STAT. ANN. § 9-1401 (1971 Burns); KY. CIV. R. 43.03; LA. CODE OF CIV. P. art. 710; MISS. CODE ANN. § 2522 (1942); MO. STAT. ANN. § 510.110 (1942 Vernon); N. M. STAT. ANN. § 21-8-1 (1953); ORE. REV. STAT. § 17.050 (1971); S. D. COMP. LAWS § 15-19-1 (1967).

146 Lewis v. Barley, 300 F.2d 788 (7th Cir. 1962); Skinner v. Lundy, 149 F.Supp. 57 (W. D. Ky. 1957).